

##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주요 수정사항

-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주요 수정사항은 자료집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자료집」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 ○ 「2021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수정사항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2.18.	P47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1-① 편의시설이 <b>편의시설</b>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평가내용 문구수정> A1-① 편의시설이 <b>법적</b>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2019.12.18.	P89 C1-2.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C1-2-①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 16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한 경우 점수 부여	<인정범위 문구 명확화> C1-2-①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 16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b>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각각 연 16시간 이상 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b>
2019.12.18.	P91 C1-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b>단순 및 종결사례 제외</b>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최소 30case 미만 제출 시 미흡(1점))	<평가방법 문구수정>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b>단순 사례 제외</b>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최소 30case 미만 제출 시 미흡(1점))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0.3.19.	P74 B8. 직원채용의 공정성	B8-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b>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b> - 필수포함사항 : 범죄 이력조회서(성범죄, 장애인,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포함), 경력(전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건강진단서)	<근거 및 필수포함사항 수정> B8-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동법 제35조의2(종사자),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동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동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필수포함사항 : 범죄 이력조회서(성범죄, <b>아동학대(아동학대는 2020년)</b> ), 경력(전력)조회 공문,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2020.3.19.	P112 D3. 고충처리	※ 참고 - 3년간 고충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이용자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	<인정항목 추가> ※ 참고 - 3년간 고충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이용자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근거가 <b>확인될 경우 ②, ④ 항목 인정</b>

○ 「2021년도 사회복지관 평가 주요지침」 수정사항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2.18.	P37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예산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산항목</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b>보조금 수입</b></td> <td>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td> </tr> </tbody> </table>	예산항목	설명	<b>보조금 수입</b>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	<p>&lt;용어수정 및 문구 추가&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산항목</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b>경상 보조금</b></td> <td>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 * <b>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b></td> </tr> </tbody> </table>	예산항목	설명	<b>경상 보조금</b>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 * <b>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b>
예산항목	설명										
<b>보조금 수입</b>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										
예산항목	설명										
<b>경상 보조금</b>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관 03, 항31, 목311, 목312, 목313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 제외 *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보조금 수입 제외 * <b>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b>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0.3.19.	P38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내 직원 개 념 정의	<b>1. 직원의 범위</b> ○ 월별 확보 직원 수 - B5 : 경상보조금 정규직 직원(주40시간 이상 또는 미만 근무자도 포함) - B6, B7, E1 : 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단,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인정, 일부지표에서는 예외직원 있음)을 의미함	<b>&lt;직원의 범위 문구 추가&gt;</b> <b>1. 직원의 범위</b> ○ 월별 확보 직원 수 - B5 : 경상보조금 정규직 직원(주40시간 이상 또는 미만 근무자도 포함) - B6, B7, E1 : 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단,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인정, 일부지표에서는 예외직원 있음)을 의미함 - 별도로 직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지표의 직원은 재원, 계약 기간, 근무시간 등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의미함

○ 「붙임2. 편의시설 설치여부 체크리스트」 수정사항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2.18.	P133 (P139)	편 의 시 설 유형별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r> </thead> <tbody> <tr> <td>내부시설</td> <td>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td> </tr> </tbody> </table>	구분		내부시설	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b>&lt;문구 추가&gt;</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r> </thead> <tbody> <tr> <td>내부시설</td> <td>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b>(1층 건물 제외)</b></td> </tr> </tbody> </table>	구분		내부시설	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b>(1층 건물 제외)</b>
구분												
내부시설	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구분												
내부시설	V.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b>(1층 건물 제외)</b>											

○ 「2018년도 평가지표 대비 2021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수정사항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2.18.	P23	B12. 직 원 의 권 리 및 인 권 보 호	<b>&lt;평가항목 삭제&gt;</b> C10-⑤ 직원자치단체 운영 C10-⑩ 기타( )	<b>&lt;평가항목 삭제&gt;</b> C11-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C11-⑥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2.18.	P23 B12. 직원의 권리와 인권의 보호	<p>&lt;평가항목 B11-①로 통합&gt; C9-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9-⑥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p> <p>&lt;인정범위 수정&gt; B11-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필수포함 : 시간 외 수당 지급(대체휴가도 인정)</p> <p>&lt;인정범위 수정&gt; B11-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 법률근거 추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필수포함 : 병가, 휴직제도 충분히 보장</p> <p>&lt;평가항목 유지&gt; B11-③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lt;평가항목 유지&gt; B11-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p> <p>&lt;인정범위 수정&gt; B11-⑤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 직원면담, 연2회 정기적인 고충관련 회의 개최(필수)</p> <p>&lt;평가항목 유지&gt; B11-⑥ 기타( )</p>	<p>&lt;평가항목 B12-① 인정범위로 통합&gt; C11-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C11-③ 이용자가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 B12-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p> <p>&lt;평가항목 유지&gt; B12-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p> <p>&lt;인정범위 추가&gt; B12-② 직원 고용계약 시(또는 연장 시) 합당한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인정범위 : 평가기간 내 근로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없을 시 관련규정이거나 지침 내 근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점수부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지자체 직영시설 해당항목 점수부여</p> <p>&lt;신규항목 추가&gt; B12-③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p> <p>&lt;신규항목 추가&gt; B12-④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연1회이상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p>
2019.12.18.	P30 C1-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p>&lt;평가방법 수정&gt; 기존 평가기간 3년간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중 30case를 기관에서 제출 → 모든 사례관리(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b>단순 및 종결</b>사례 제외) 제출하여 그 중 5case를 무작위 선정하여 평가</p>	<p>&lt;평가방법 수정&gt; 기존 평가기간 3년간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중 30case를 기관에서 제출 → 모든 사례관리(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b>단순사례</b> 제외) 제출하여 그 중 5case를 무작위 선정하여 평가</p>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0.3.19.	P18	B1. 사업비 비율	<p>&lt;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gt;</p> <p>B1. 사업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li> <li>· (기존) 전국,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li> <li>- 경상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대상 추가</li> <li>· (기존) 기능보강사업비 → (변경) <b>기타보조금, 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b></li> <li>- <b>지역규모</b> 정의 추가(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li> </ul>	<p>&lt;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li> <li>· (기존) 전국,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li> <li>- 경상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대상 추가</li> <li>· (기존) 기능보강사업비 → (변경) 기능보강사업비, <b>기타보조금, 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b></li> <li>- <b>도시규모</b> 정의 추가(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li> </ul>
2020.3.19.	P19	B3. 회계의 투명성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p> <p>B3-④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또는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li> <li>- 지자체직영시설은 해당항목 점수 부여</li> </ul>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p> <p>B3-④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또는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 <b>운영위원회 보고</b></li> <li>- 지자체직영시설은 해당항목 점수 부여</li> </ul>
2020.3.19.	P20	B6. 직원근속률	<p>&lt;인정범위 수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li> <li>· (기존) 경상보조금 임금지급 인력(정규직, 계약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재원에 상관없이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li> </ul> </li> <li>-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li> <li>· (기존) 시설유형별,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li> <li>- 기준일자 변경</li> <li>· (기존) 매년 12월 31일 기준 → (변경) 매년 12월 기준</li> </ul>	<p>&lt;인정범위 수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li> <li>· (기존) 경상보조금 임금지급 인력(정규직, 계약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b>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b> 근무하는 모든 직원.(단, 정규직은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li> </ul> </li> <li>-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li> <li>· (기존) 시설유형별,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li> <li>- 기준일자 변경</li> <li>· (기존) 매년 12월 31일 기준 → (변경) 매년 12월 기준</li> </ul>

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0.3.19.	P20	B7.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 교육참여시간	<p>&lt;인정범위 수정&gt;  <b>B7. 직원 교육활동비</b>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  · (기존) 경상보조금 임금지급 인력(정규직, 계약직)  → (변경) <b>재원에 상관없이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b>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 (기존) 시설유형별,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p>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  <b>C4-②</b> 시설의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b>총 교육시간</b>을 산정한다.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 재원에 상관없이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 도시규모, 중위값</p>	<p>&lt;인정범위 수정&gt;  <b>B7-① 직원 교육활동비</b>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  · (기존) 경상보조금 임금지급 인력(정규직, 계약직)  → (변경) <b>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단, 정규직은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b>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 (기존) 시설유형별,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p>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  <b>B7-②</b> 시설의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b>평균교육시간</b>을 산정한다.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 <b>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b> 근무하는 모든 직원(단, 정규직은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 도시규모, 중위값</p>
2020.3.19.	P21	B8. 직원채용의 공정성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  B8-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 외부위원 구성 시 <b>동일 법인의 직원</b> 제외</p> <p>&lt;인정범위 수정&gt;  B8-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 범죄이력조회 범위 확대 : <b>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포함</b></p>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  B8-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 외부위원 구성 시 <b>시설직원, 동일 법인 관계자</b> 제외</p> <p>&lt;인정범위 수정&gt;  B8-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 범죄이력조회 범위 확대 : <b>아동학대 포함(2020년부터)</b></p>
2020.3.19.	P26	E1. 외부자원개발	<p>E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변경 : <b>주40시간 이상 채용한 모든 인력</b>  - 예외적용 직원 명시 : 환경미화원, 취사원, 경비원, 운전원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변경  · (기존) 시설유형별, 정규분포 → (변경) 도시규모, 중위값</p>	<p>&lt;신규항목 추가&gt; 대상기간 : 2020.1.1.~12.31.  E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 월별확보직원수 기준 : <b>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40시간 이상</b> 근무하는 모든 직원(단, 정규직은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  - 예외적용 직원 명시 : 환경미화원, 취사원, 경비원, 운전원  - 상대평가 기준 및 배점구간 : 도시규모, 중위값</p>